
2023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권영향평가 결과

2023. 12.

I 추진 배경

1. 관련근거

- 「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」 및 「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」 (국가인권위원회, '18. 8. 28.)
- 「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」 (국가인권위원회, '22. 8. 16.)

2. 사업의 필요성

- 기업의 인권보호 및 존중 실현에 대한 국가적 요구가 증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인권침해 및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선도적 역할 필요
- 사후 구제절차를 통한 인권침해 해결방안 모색 방법에서 벗어나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진단하여 개선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를 통한 예방적 차원의 인권증진 도모 필요

3. 사업 개요

- 사업기간 : 2023. 11. ~ 12.
- 사업대상 :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
- 사업내용

가. 평가 제반사항 준비

- 1) 인권영향평가 개요
- 2) 평가지표 점검
- 3) 평가대상 및 평가위원 선정 및 지표교육

나. 평가실시 및 결과 도출

- 1) 평가실시
- 2) 결과 및 개선과제 도출

II 주요 사업 결과

가. 평가 제반사항 준비

1) 인권영향평가 추진 개요

○ 평가개념

- 기관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·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진단하기 위한 평가

○ 평가주체별 역할 체계

인권경영위원회 (평가위원)	주관부서 (윤리감사실)	피평가부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가지표 검토 및 확정 • 평가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면평가 및 담당자인터뷰 • 평가결과 검토 및 최종 확정 • 인권증진 및 개선과제 발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가총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가대상 선정 및 지표개발 - 평가과정 관리 및 안내 • 평가위원 및 피평가부서 대상 평가지표 교육 •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가지표별 자가진단(Self-Check) 실시 및 증빙자료 취합 제출 • 평가위원 인터뷰 대응 •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이행

○ 평가방법 및 기준

- (평가방법)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이 평가위원이 되어 서면평가 및 피평가부서 담당자 인터뷰 등 실시
- (평가기준)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
- (점수 및 평가등급 체계)

평가내용	충족(예)	보완필요	미충족(아니오)	정보없음	해당없음
점수	2점	1점	0점	점수미산출	점수미산출

※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(정보없음, 해당없음)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산출에서 제외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	8등급	9등급
평점	100~90점	90~80점	80~70점	70~60점	60~50점	50~40점	40~30점	30~20점	20~0점

○ 평가추진 일정 및 세부내용 확정

	일정	추진사항	세부내용
(사전)	10.23. ~ 11.3. (2주)	사전 조사 및 지표확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환류 점검 ○ 분야별 평가 지표 확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한 평가지표 및 계획 의결
1단계	10.30. ~ 11.10. (2주)	평가위원 구성 및 제반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내·외부 평가위원 구성 ○ 평가일정, 방식 등 제반사항 최종확정 ○ 인권영향평가 시행 전사 공표 및 주요 내용 안내
2단계	11.13. ~ 12.8. (4주)	인권영향평가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평가부서별 전담직원 선정 및 협조사항 안내 ○ 분야별 평가실시, 결과 산출 및 중대성 평가 실시 (서면평가 및 인터뷰 등 진행)
3단계	12.11. ~ 12.22. (2주)	평가결과 도출 및 인권경영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종 평가결과 및 주요 인권이슈 도출 ○ 최종 결과 의결 및 중장기 인권경영 개선방안 마련

2) 평가지표 점검

○ 「인권경영 매뉴얼」에 따른 평가분야 확정

- 평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년도 평가지표 적용

기관운영			주요사업		
연번	분야	지표수	연번	분야	지표수
1	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28	1	공정운영	28
2	고용상의 비차별	16	2	안전보장	16
3	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	14	3	고객 및 근로자 인권보장	14
4	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	23	4	사회적 약자 편의보장	23
5	산업안전 보장	16			
6	책임있는 공급망 관리	8			
7	현지주민 및 고객인권 보호	19			
8	환경권 보장	11			

3) 평가대상 및 평가위원 선정 및 지표교육

○ 평가대상

	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	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
피평가 본부	윤리감사실, 경영혁신본부 소통협력실 정보데이터팀	가족서비스전문성향상본부 가족다양성수용증진본부 양육비이행지원본부
지표구성	8개 분야 27개 항목 136개 지표	4개 분야 14개 지표

○ [기관운영] 평가지표

- 평가분야 및 분야별 평가항목

연번	분야 (평가위원)	세부항목	피평가부서	지표수
I	인권경영체제의 구축 (박찬성 위원)	① 인권존중 정책선언	윤리감사실	6
		② 인권영향평가		5
		③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		5
		④ 인권경영 성과		6
		⑤ 구제절차 마련		6
II	고용상의비차별 (권오상 위원)	① 고용상 비차별	창의인재부	5
		② 고용상 남녀 비차별		6
		③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		5
III	결사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(권오상 위원)	① 결사·단체교섭의 자유	창의인재부	4
		②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처우 금지		5
		③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		5
IV	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 (권오상 위원)	① 강제 노동의 금지	창의인재부	8
		② 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		3
		③ 연소자 고용금지		6
		④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		6
V	산업안전보장 (박찬성 위원)	① 작업장 안전	경영지원부	5
		②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		4
		③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		4
		④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		3

연번	분야 (평가위원)	세부항목	피평가부서	지표수
VI	책임있는공급망관리 (박찬성 위원)	①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및 모니터링	경영지원부	6
		②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		2
VII	현지주민 및 고객 인권 보호 (김예리 위원)	①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·보호	경영지원부	7
		②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		3
		③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	소통협력실	3
		④ 고객정보 보호	지식정보부	6
VIII	환경권 보장 (김예리 위원)	①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	경영지원부	5
		② 환경정보의 공개 및 비상계획 수립		6

○ [주요사업] 평가지표

- 평가사업 및 평가분야

사업	연번	평가분야
가족서비스전문성향상사업	1	공정운영
가족다양성수용증진사업	2	안전보장
양육비이행관리사업	3	고객및근로자인권보장
	4	사회적약자편의보장

- 분야별 평가항목

연번	분야	세부지표(요약)
1	공정 운영	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정성 확보
		근로자에 대한 민원접수 창구 운영
		협력기관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
		업무매뉴얼의 법적 기준 준수
		지적재산권 소유자에 대한 권리보호
2	안전 보장	근로자 및 사업 참여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및 안내 의무화
		교육, 워크숍 등 사업 관련 상비약 등 구비
3	고객 및 근로자인권보장	개인정보 및 보안규정 마련
		근로자 대상 폭력예방교육 의무화
		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장치 마련
		부서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 및 모니터링 교육, 역량강화 등 근로자 근무여건 보장
4	사회적약자 편의 보장	사회적약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마련
		사회적약자 대응 방법 숙지

○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

- 「인권경영지침」에 따라 인권경영위원회 구성하여 위원 중 일부가 평가위원이 되어 평가 실시

○ 지표교육

- 교육대상 : 평가위원 및 피평가부서 전담직원
- 교육내용 : ①평가개요 및 추진일정
②평가지표 및 세부내용, 점수산출 기준 등
③체크리스트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 등
- (평가위원) 서면자료로 안내
- (피평가부서) 별도 공문을 통해 자료 전달 후 분야별 담당자 교육 실시 및 상시 질의응답

나. 평가실시 및 결과 도출

1) 평가실시

○ 평가 세부 진행방식

주체	추진사항	세부내용
주관부서	평가지표별 평가위원 지정	○ 위원장을 제외한 내·외부 인권경영위원들은 평가지표 상의 10개 평가군을 각각 1~3개씩 전담
피평가 부서	지표 답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	○ 피평가부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① 지표에 대한 자가평가(Self-Check)서 ② 지표별 증빙자료 작성하여 제출
평가위원	평가실시	○ 피평가부서 제출자료 기반으로 점수 확정 ○ 필요에 따라 담당자 인터뷰 실시
주관부서	평가결과 취합 정리	○ 평가위원 평가결과 취합 및 점수 산출 ○ 인권경영위원회 평가결과 최종 의결

2) 결과 및 개선과제 도출

[기관운영분야]

○ 평가결과 확정

- 점수 및 등급 산출 후 최종 결과 인권경영위원회 의결
- 평가결과 : **1등급, 98.66점 획득** (전년도(97.66점) 대비 1점 상승)

분야	점수	2022년	결과그래프
I. 인권경영체제의 구축	96.4	100	
II. 고용상의 비차별	100	100	
III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	100	100	
IV. 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	100	100	
V. 산업안전 보장	100	100	
VI.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	92.9	81.3	
VII. 현지주민 및 고객인권 보호	100	100	
VIII. 환경권 보장	100	100	

○ 항목별 세부 평가결과

평가분야 및 항목	득점	만점	합계 (득점 / 만점)	환산점수 (100점만점)
I.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			
① 인권존중 정책선언	12	12	54 / 56	96.4
② 인권영향평가	8	10		
③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	10	10		
④ 인권경영 성과	12	12		
⑤ 구제절차 마련	12	12		
II. 고용상의 비차별				
① 고용상 비차별	10	10	32 / 32	100
② 고용상 남녀 비차별	12	12		
③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	10	10		
III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			
① 결사·단체교섭의 자유	8	8	26 / 26	100
②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처우 금지	10	10		
③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	8	8		
IV. 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				
① 강제 노동의 금지	12	12	20 / 20	100
② 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	-	-		
③ 연소자 고용금지	8	8		
④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	-	-		
V. 산업안전 보장				
① 작업장 안전	10	10	30 / 30	100
②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	8	8		
③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	8	8		
④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	4	4		
VI.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				
①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및 모니터링	11	12	13 / 14	92.9
②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	2	2		
VII. 현지주민 및 고객 인권보호				
①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·보호	-	-	24 / 24	100
②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	6	6		
③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	6	6		
④ 고객 정보 보호	12	12		
VIII. 환경권 보장				
①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	10	10	18 / 18	100
② 환경정보의 공개 및 비상계획 수립	8	8		

○ 평가 총평

- 기관은 인권경영 체제를 적절히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음. 특히 '고용상의 비차별', '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', '강제노동의 금지' 등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
- 또한 '산업안전 보장', '주민 및 고객 인권보호 노력', '환경권 보장' 분야 역시 다양한 방면의 노력 및 ESG경영활동으로의 확장 등을 통해 내·외부 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- 특히 환경분야 에너지 절약 계획 및 실행, 개선활동 등은 높은 수준의 인권경영 실천항목으로 평가받음
- 다만 매년 평가 시 협력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인권보호 노력의 점검과 실질적 평가 및 개선 장려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경영관리본부 차원의 개선이행이 시급함

○ 평가 미흡분야 기반 개선과제 도출

[협력업체 인권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 차원의 개선 필요]

- 공공기관으로서 기관내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경영운영도 중요하지만, 나아가 협력업체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외적 노력을 통해 인권경영의 민간분야 확산을 선도하는 역할 역시 중요 요소임
- 이와 관련하여, 협력업체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에 포함시키는 노력에 대한 지표와 협력업체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의 마련 여부를 평가하여 계약추진 시 반영·고려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함

[근로자 정신건강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지표 강화 필요]

- 기관은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 및 보건분야에 대해 시설점검, 컨설팅, 장애물제거,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면으로 우수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, 지난 2년간 정신적·심리적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리 노력을 강화시켜왔음*

* 게시판 [창의인재 뉴스레터 02호] 근로자 상담지원제도(EAP) 이용 안내, '23.7.12)

- 이러한 기관의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 평가지표 보완을 통해 보다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

[고객 정보보호 활동 고도화 필요]

-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및 사전 체크리스트 등 제도는 적절히 마련되어있으나,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과 책임자 공개 등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정보보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
[주요사업분야]

○ 평가결과 확정

- 점수 및 등급 산출 후 최종 결과 인권경영위원회 의결
- 평가결과 : **1등급, 평균 95.05점 획득** (전년도(96.43점) 대비 1.37점 하락)

	가족서비스전문성 향상사업		가족다양성수용 증진사업		양육비이행 관리사업	
	득점/만점	환산점수	득점/만점	환산점수	득점/만점	환산점수
합계	27 / 28	96.4	26 / 28	96.4	24 / 26	92.3
I. 공정운영	10 / 10		9 / 10		7 / 8	
II. 안전보장	4 / 4		4 / 4		3 / 4	
III. 고객 및 근로자 인권보장	10 / 10		10 / 10		10 / 10	
IV. 사회적 약자 편의보장	3 / 4		4 / 4		4 / 4	

○ 평가 총평

- 기관의 3개 분야 주요사업 모두 평가 결과 1등급(90점 이상)으로,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전반에 우수한 평가결과를 획득함
- 전사적인 인권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에 발맞추어 각 사업 운영 및 실무 수행 시 해당 사업의 특성과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맞춤형의 인권보호 노력이 나타남

○ 평가 미흡분야 기반 개선과제 도출

[민원 접수·개선 및 가족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방안 마련 필요]

- 기관은 국민신문고, 사업별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민원을 접수·처리하고 개선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- 그러나 고객 민원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본부·기관·여성가족부 차원으로 공유 및 처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- 또한, 주요 고객인 가족센터 종사자에 대해 신규대상 또는 사각지대 및 소외계층 대상자 등에 대해 보다 맞춤형의 역량강화 실현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음

[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·교육적 장치 보완]

- 현재 기관은 고객응대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전사적 노력으로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제도 유선(전화음성)안내 장치 운영 및 직원 대상 소진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
- 그러나 이에대한 기반 차원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매뉴얼이 구체적이지 않아 근로자 피해 발생 시 미흡한 대처 및 보호가 발생할 리스크가 존재하므로, 매뉴얼 최신화 및 사례보완 등이 필요함

[사회적 약자의 편의 보장을 위한 지속적 노력]

- 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- 다만 안전보장의 차원에서 근로자 및 고객을 위한 상비약 구비가 보완되어야 하는 본부가 있음

[인권경영위원회 의결 결과]

○ 2023년 인권경영위원회 서면 개최 결과

- 개최 일 : 2023. 12. 20.(수)
- 안 건 : [2023-1-2] 2023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과제
- 의결결과 : 위원 7명 전원 원안 승인

VI 향후 계획

- 조사 결과 대내·외 공표 및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에 개선과제 전달 후 2024년 연중 과제 이행 모니터링 실시
- 2024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 및 인권경영위원회 심의위원 제언사항 등을 바탕으로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